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4회 임시회(2020. 10. 27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 
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141
----------	--------

2020. 10. 27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(환경과)
- 나. 제 안 일 : 2020. 10. 12.
- 다. 회 부 일 : 2020. 10. 13.

### 2. 제출이유

2013년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조항 삭제 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시설이 부적합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항 삭제(안 제17조)
- 나.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(안 제10조 별표3)
  - 1) 기본부과금액 : 20,350원 → 22,500원
  - 2) 초과부과금액 : 1,540원 → 1,800원
  - 3) 공휴일할증 신설 : 7%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0. 9. 3.~ 9. 23.(의견없음)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- 2013년도 수수료 인상이후 7년간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·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수집 원가의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요청함.
- 이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원가 상승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17조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시설이 부적합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 「하수도법」에서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조례로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삭제가 타당함.

- 안 제10조 관련 별표 3은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<sup>1)</sup> 수수료 중 기본요금을 0.75㎥ 기준 현재 20,350원에 서울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결과인 10.56%, 2,150원 증가한 22,500원으로 하고 초과부과금액은 0.1㎥ 당 1,540원에서 16.9%, 260원 증가한 1,800원으로 인상하며, 할증비율을 기존 야간, 지하할증에 공휴일 할증 7%를 신설하였음.
- 2013년 이후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 2015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시 자치구 대상 분뇨 수거원가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수수료를 기본요금 22,500원, 초과요금 2,149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는데, 그동안 마포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부담 최소화 기조 속에서 2018년 자체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.

계	시 설 규 모 (소규모 50인조 미만 전체 정화조시설 중 74.4% 차지)					
	50인미만	50인이상 100인미만	100인이상 200인미만	200이상 500인미만	500인이상 1,000인미만	1,000인 이상~
<b>23,702 (100%)</b>	17,639 <b>(74.4%)</b>	3,417 <b>(14.4%)</b>	1,239 <b>(5.2%)</b>	861 <b>(4%)</b>	260 <b>(1%)</b>	286 <b>(1%)</b>

<표 1.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>

1) 개인하수처리시설 = 오수처리시설 + 정화조

오수처리시설 : 오수를 침전·분해하여 처리하는 시설

정화조 :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분뇨오수를 침전·분해하여 정화하는 시설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기본요금은 통일하고 초과요금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정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분뇨 수집·운반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임.
-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, 타 자치구 개정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시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보임.

연번	자치구	최근조정 연월일	종전조정 연월일	종전요금 조정내역		종전인상 률 (초과요금)
			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초과요금 (0.1㎡당)	
1	강 북	'17.09.01	'07.05.01.	23,430원 → 23,430원	1,640원 → 2,220원	35%
2	성 북	'18.01.01	'07.12.01	22,500원 → 22,500원	1,630원 → 2,150원	32%
3	관 악	'18.01.01.	'09.03.01.	22,900원 → 22,500원	1,600원 → 2,120원	33%
4	도 봉	'17.03.30.	'09.03.15	22,850원 → 22,500원	1,600원 → 2,116원	32%
5	노 원	'17.12.28.	'09.06.01.	22,570원 → 22,500원	1,620원 → 2,050원	27%
6	동 작	'19.01.01	'10.01.01.	21,800원 → 22,500원	1,600원 → 1,972원	23%
7	강 동	'18.01.01.	'08.07.01.	22,400원 → 22,500원	1,560원 → 1,960원	26%
8	금 천	'18.07.01.	'09.09.01.	22,350원 → 22,500원	1,610원 → 1,892원	18%
9	송 파	'18.05.10.	'09.07.17.	19,810원 → 22,500원	1,650원 → 1,830원	11%
10	구 로	'18.07.01.	'10.12.01.	22,100원 → 22,500원	1,600원 → 1,792원	12%
11	광 진	'18.01.01	'11.12.01.	20,310원 → 22,500원	1,450원 → 1,790원	23%
12	서 초	'17.07.01.	'09.11.02.	19,500원 → 22,500원	1,380원 → 1,700원	23%
13	영등포	'17.07.01.	'11.09.01.	21,140원 → 22,300원	1,490원 → 1,620원	9%
14	강 남	'17.06.01.	'09.04.01.	19,500원 → 22,500원	1,380원 → 1,608원	17%
15	강 서	'16.01.01.	'10.07.01	18,330원 → 21,580원	1,320원 → 1,550원	17%
16	동대문	'19.06.01.	'13.01.01	21,600원 → 22,500원	1,620원 → 1,950원	20%
17	성 동	'19.06.01.	'15.10.29	20,310원 → 22,500원	1,450원 → 1,720원	19%
18	은 평	'20.01.02.	'08.09.25	22,500원 → 22,500원	1,500원 → 1,900원	27%

<표 2. 자치구별 수수료 조정 사항>

- 다만,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행업체 수익 증가분이 직원 급여 인상과 시설·장비의 보수와 개량, 노후차량 교체 및 차량 증차 등 청소서비스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 수수료 인상이

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 급작스런 수수료 인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 [관 계 법 령]

## 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